



서울대학교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

[시행 2022.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38호, 2022.1.3, 전부개정]

교무과 880-516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사·석사 연계과정 및 학사과정과 석사·박사통합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통칭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12., 2022.01.03.]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전공(이하 “학과(부)”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 내 또는 대학(원) 상호간에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선발인원, 선발방법, 과정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학(원) 상호간에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장이 주관하여 해당 대학(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학사·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 이상,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8년 이상으로 하며,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1. 학사학위과정 : 6개월(1개 학기)[개정 2022.01.03.]
2. 석사학위과정 : 1년(2개 학기)[개정 2022.01.03.]
3. 석사·박사통합과정 : 1년(2개 학기)[개정 2022.01.03.]

제4조(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에 소속되거나,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01.03.]

1.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개정 2022.01.03.]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 3.3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개정 2022.01.03.]
3.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개정 2022.01.03.]

②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5조(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에서 학사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 입학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2.01.03.]

제6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각 대학(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매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시 매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24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제8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각 대학(원)의 장은 연계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초에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과(부)장(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학과(부)에 소속한 학생은 타 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의 이수를 포기할 수 없다.[개정 2022.01.03.]

④ 연계과정 학생은 선발된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의 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22.01.03.]

⑤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또는 전공주임)은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대학원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01.03.]

⑥ 연계과정 학생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과(부)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1.03.]

⑦ 연계과정 학생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각 학위과정 별로 정한 등록 및 수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제9조(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포기자"라 한다)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포기원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 중 석사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8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2. 7. 12., 2022.01.03.]

③ 연계과정 중 석사·박사통합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는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2022.01.03.]

제10조(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에서 정한 소정학기 이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 3.3 이상 취득[개정 2022.01.03.]

2. 해당 학기에 대학원 등록[개정 2022.01.03.]

3. 연구활동계획서 1회 이상 제출[개정 2022.01.03.]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졸업신청서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④ [삭제 2022.01.03.]

제11조(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① 연계과정은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면제한다.[개정 2022.01.03.]

②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개정 2022.01.03.]

③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01.03.]

④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2338호,2022.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